

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1. 5.>

제조원료 투입비율, 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(제7조제3항 관련)

1.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

가. 적용대상: 보통비료(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 및 부산물비료

나. 허용기준

제조원료 투입비율	허용기준	예시
20% 이상	±20%	제조원료 투입비율이 20%인 경우: 20%×(±20%) = 24% ~ 16%(허용기준)
5% 이상 20% 미만	±30%	
5% 미만	±0%	

비고: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

2.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

가. 보증성분

성분별 보증성분량	허용기준	예시
50% 이상	각 보증성분량의 ±5%	복합비료의 성분 중 질소가 20%인 경우: 20% × (±10%) = 22% ~ 18%(허용범위)
15% 이상 50% 미만	각 보증성분량의 ±10%	
1% 이상 15% 미만	각 보증성분량의 +30% -10%	
0.1% 이상 1.0%미만	각 보증성분량의 +100% -10%	
0.1% 미만	각 보증성분량의 +200% -10%	

비고: 각 성분의 합계량이 보증성분량의 합계량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
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

3. 복합비료 및 미량요소복합비료외의 비료

가. 보증성분

비료 공정규격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 이상일 것

나.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
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할 것